

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9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은,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2,153㎡ 779,922천원이고, 건물취득으로 2건 3동에 3,288.37㎡ 5,630,034천원입니다.

가. 토지 취득(매입)

①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 (자치행정과)

- 평창읍 하리 235-5번지의 4필지 2,153㎡ 779,922천원

나. 건물 취득

①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(주민생활지원과)

- (신축 1동) 용평면 장평리 317-22번지 615㎡ 1,550,000천원

②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 (자치행정과)

- (매입후 철거 1동) 평창읍 하리 77-3번지, 398.37㎡ 195,034천원
- (신축 1동) 평창읍 하리 235-5번지의 5필지 2,275㎡ 3,885,000천원

3. 붙임자료

- 가.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부.
- 나. 사업계획서 1부.
- 다. 관계법령 발췌 1부.

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

[총괄표]

(단위:㎡,천원)

구 분			변경전			변경후			증감		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합계	토지	6	83,983	6,554,268	7	86,136	7,334,190	1	2,153	779,922	
		건물	3	5,631	4,279,966	5	8,919.37	9,910,000	2	3,288.37	5,630,034	
		기타										
	매입	토지	6	83,983	6,554,268	7	86,136	7,334,190	1	2,153	779,922	
		건물	3	5,631	4,279,966	5	8,919.37	9,910,000	2	3,288.37	5,630,034	
		기타										
	교환	교	토지									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		기타	토지									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처분	합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교환	교	토지									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		기타	토지									
			건물									
			기타									

2015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3차)

(단위:m²,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토지취득 (1건, 5필지)			2,153	779,922			
소계 (5필지)			2,153	779,922			
1	전	평창읍 하리 235-5	652	248,803	하반기	평창보건소 이전 신축	최신 *
	구거	“ 435-3	136	47,790			최신 *
	전	“ 235-14	318	105,322			조대 *
	전	“ 233	521	156,613			천장 *
	대	“ 77-3	526	221,394			평창중· 고등학교 동문회
건물취득 (2건, 3동)			3,288.37	5,630,034			
소계 (1동)			615	1,550,000			
1	잡	용평면 장평리 317-22	615	1,550,000	'15.10월 ~'16.10월	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	평창군
소계 (2동)			2,673.37	4,080,034			
2	대	평창읍 하리 77-3	398.37	195,034	하반기	평창보건소 이전 신축	평창중· 고등학교 동문회
	대	평창읍 하리 235-5외 5	2,275	3,885,000	'16. 4월 ~'17. 4월		평창군 외 4

<사업계획 1>

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계획

- 장마철 어린이집 지하실 침수로 벽면 곰팡이 발생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·간접 영향을 주며, 건물 앞 도로 진·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
-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을 마련하여 안정감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용평면 장평리 317-22번지
- 부지면적 : 1,165m²
- 사업량 : 건물신축 1동(지상 2층, 연면적 615m²), 정원 76명
- 사업비 : 1,550백만원(국도비 327 전경련 740 군비 483)
- 사업기간 : '15. 10월 ~ '16. 10월
- 주요시설 : 보육실, 유희실, 조리실, 화장실, 사무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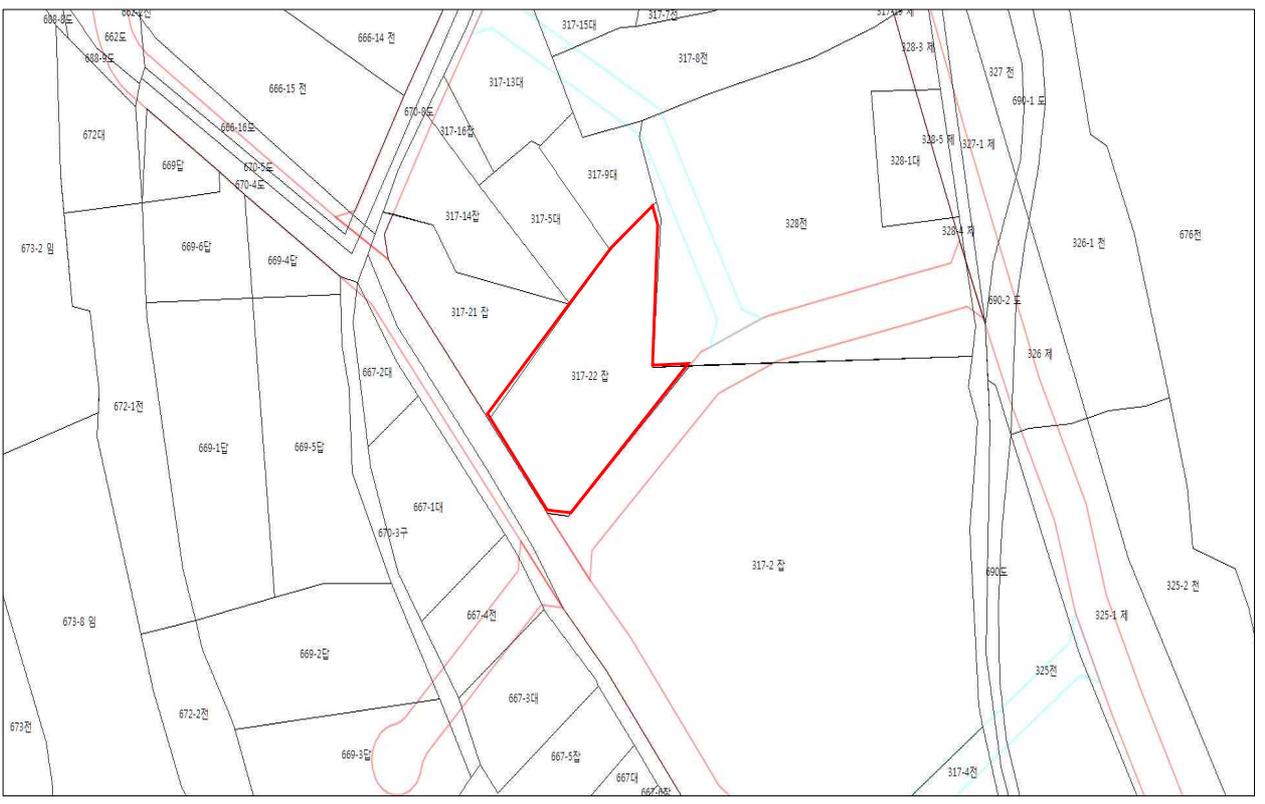
□ 추진상황

- 전경련 보육지원사업 공모 선정(740백만원 확보) : '14. 9. 5.
- 국·도비(327백만원) 예산 확정 : '15. 4. 13.
- 사업대상지 분할·경계측량 완료(장평리 317-2) : '15. 7. 31.
※ 장평리 317-2번지 9,068m²중 분할된 317-22번지 1,165m²를 신축부지로 사용
- 행정재산 용도변경 : '15. 8. 26.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비 예산 반영(2회추경) : '15. 9월
- 이전 신축공사 사업추진 : '15. 10월 ~ '16. 10월
※ 푸르니 보육지원재단(민간대행사업)

□ 위치도 및 지적도



<사업계획 2>

평창보건소 이전 신축계획

-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의 증가 및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는 높아지고 교통 발달로 인근 도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져 의료원 이용률 저하 등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하게 발생

⇒ 교통 약자 및 고령층의 접근성이 편리한 시가지로 이전 신축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평창읍 하리 235-5번지외 5필지(평창군산림조합 옆)
- 사업량 : 건물신축 1동(지하 1층/지상 2층, 연면적 2,275㎡)
- 총사업비 : 5,285백만원(국비 2,603, 도비 621, 군비 2,061)
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기투자	2015년			2015년이후
			계	확보	미확보	
계	5,285	-	1,400	-	1,400	3,885
국비	2,603	-	-	-	-	2,603
도비	621	-	-	-	-	621
군비	2,061	-	1,400	-	1,400	661

* 건축비 국비지원 ㎡당 1,620천원, (보조비율: 국비 67%, 도비 16%, 군비 17%)

- 사업기간 : '16. 4월 ~ '17. 4월

□ 사업대상지

연번	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(㎡)	소유자	비고
계		6필지		2,722		
1	평창읍 하리	235-5	전	652	최신*	조대*의 妻
2	평창읍 하리	435-3	구거	136	최신*	
3	평창읍 하리	235-14	전	318	조대*	
4	평창읍 하리	233	전	521	천장*	
5	평창읍 하리	77-3	대	526	평창중고등학교동문회	건물1동
6	평창읍 하리	77-1	대	569	평창군	주차장

□ 입지분석 등

- 동문회관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, 주거 밀집지역으로 교통 약자(다문화, 장애인, 영유아 등) 및 고령층의 접근이 편리함.
 ⇨ 아파트 신축 민원으로 인한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소
- 군청, 경찰서, 산림조합, 평창초등학교 등 관공서들이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인근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음.

□ 취득대상 재산목록

○ 토지취득(매입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재산가액(원)		소유자
				기준가격	추정가격	
계	5필지		2,153	779,921,200	1,057,830,000	
평창읍 하리	235-5	전	652	248,803,200	345,560,000	최신*
“	435-3	구거	136	47,790,400	72,080,000	최신*
“	235-14	전	318	105,321,600	168,540,000	조대*
“	233	전	521	156,612,600	182,350,000	천장*
“	77-3	대	526	221,393,400	289,300,000	평창중·고등학교동문회

※ 토지매입비는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감정평가시 변동될 수 있음.

○ 건물취득 : 2동 (매입 1동, 신축 1동)

- 매입(매입 후 철거)

(단위:㎡,원)

소재지	연면적	규모	구조	용도	재산가액		소유자
					기준가격 (시가표준액)	추정가격	
하리 77-3	398.37	2층	철근콘크리트	사무실	195,033,130	214,257,500	평창중·고등학교동문회

※ 건물매입비는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감정평가시 변동될 수 있음.

- 신규(신축)

(단위:㎡,원)

시설명	위 치	연면적	규모	구조	사업비
평창보건소	하리 235-5외 5	2,275	지하1층 지상2층	철근콘크리트조	3,885,000,000

관계법령 발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)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